2024학년도 학교운동부(소프트테니스부)

연간운영계획

2024. 3.

0 M -171	2024. 3. 1. ~
운영기간	2025. 2. 28.
 담 당 자	담 당 교 사 - 이*섭
급 궁 시	운동부지도자- 김*영



순창중학교 SUNCHANG MIDDLE SCHOOL

목 차

1. 육성종목 운영목적 및 필요성 1
2. 기본 방침
3. 연간 운영 계획 ···································
4. 훈련 계획 3 가. 훈련 목표 3 나. 훈련 중점사항 4 다. 연간 세부 훈련 계획 4 라. 월별 훈련 계획 5 마. 주간 세부 훈련 계획 5 바. 일일 훈련 계획 6 사. 훈련일지 7
5. 학생선수 육성 및 예산 운영 계획 9
6.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예방교육 10
7.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17
8. 기대 효과 19

I. 육성종목 운영목적 및 필요성

- 1교 1운동 육성으로 학교체육활성화
-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체육인구 저변 확대
- 스포츠의 규범과 규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 양성
- △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의 증진 및 밝고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
- 훈련을 통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대회를 대비

Ⅱ. 기본 방침

- 1교 1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통하여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로 인 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다양한 진로 기회확대와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다.
-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훈련은 연중 실시하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 학생선수는 체육 특기자로 정하며,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준하여 기본생활 습관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학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설비·교구확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수선 수를 발굴·육성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대회를 대비한다.
- 학교운동부 관리체제는 운동부지도자→담당교사→교감→학교장의 보고체계를 갖는다.

Ⅲ. 연간 운영 계획

1. 세부추진계획

일 정 준비내용	2024. 3월	2024. 4월	2024. 5월	2024. 6월	2024. 7월	2024. 8월	2024. 9월	2024. 10월	2024. 11월	2024. 12월	2025. 1월	2025. 2월
선수확보 / 선발	0	0	0	0	0	0	0	0	0	0	0	0
지도교사 및 운동부지도자 확보	0											
훈련계획서 작성 (연간, 월간, 일일)	0	0	0	0	0	0	0	0	0	0	0	0
연습 및 훈련장 확보	0	0	0	0	0	0	0	0	0	0	0	0
운동복 및 장비 확보	0	0	0	0	0	0	0	0	0	0	0	0
훈련장 장비 준비	0	0	0		0	0	0	0				
기타훈련 용품구비	0	0	0	0	0	0	0	0	0	0	0	0
훈련 실시 (학기 중 및 동·하계 강화훈련)	0	0	0	0	0	0	0	0	0	0	0	0
훈련비 확보	0	0	0		0	0	0	0	0		0	0
대회 참가	0	0	0	0	0	0	0					

2. 소프트테니스부 편성

<u>ē</u>	t교명	순 창 중 학 교					
<u> </u>	¦교장		정 진 복		담당교사	이 * 섭	
운동!	부지도자	김 * 영			주 장	김 * 우	
순	구분	학년	성 명		포지션	비고	
1	남중부	3	김*우		후위	주장	
2	남중부	3	박*후		전위		
3	남중부	2	김*은		전위		
4	남중부	2	서*수		후위		
5	남중부	1	송*준		후위		
6	남중부	1	황*석		후위		

Ⅳ. 훈련 계획

1. 훈련 목표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대회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우수한 경기력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에 입상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습득, 폭넓은 실전 경기 를 이해함으로써 경기운영능력을 강화하고,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학업에도 성 실히 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훈련 중점 사항

- 기본기 개념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개인별 전문기술을 습득하며, 경기 력의 향상을 위한 기본기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신체 기억능력을 배양한다.
- 실전과 같은 연습량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기능훈련과 경기운영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신력 강화훈련에 중점을 둔다.
-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개인 기량 및 팀플레이에 역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3. 연간 세부 훈련 계획

1) 기 간 : 2024년 3월부터

2) 지도목표 및 방침 : * 전문체력 및 기술 정착

* 컨디션 조절 및 완전한 밸런스를 만드는데 중점

* 동·하계 훈련과 연계한 기능 습득 및 숙달

_	·분	준비 및 대회 출전기	휴식 및 회복기	체력 단련기
	` T	2024년 3월 ~ 9월	10월 ~ 12월	2025년 1월 ~ 2월
목표	일반 인의 기록 향상을 목표 목표 2. 강한 정신력과 전문기술의 보강		1. 기본체력 보강 2. 휴식 및 이미지 트레이닝 을 통한 정신력 함양	 체력유지 종합 체력강화 정신력 강화 및 자신감
	훈련 1. 자신감, 집중력 창의성 배양 2. 전문적 기술을 향상 3. 정신자세를 확립		 정신력 고취 개인투지 확립 및 전문 기술 개발 	 운동체력(민첩성, 순발 력)향상 철저한 기본 기술 확립
п()	납	 종목특성에 맞게 훈련, 개인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연습경기와 기록평가회를 통해 실력향상 훈련과 시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배양 	1. 종합 체력을 육성하고 개인 부분 집중 2. 정신력의 고취	1. 피워와 조정력 향상 2. 기구를 사용한 보강운동
	훈	1. 전문기술 강화		
	<u></u>	- 보다 빠른 타격 기술 강화	1. 보강운동 중점 실시	1. 전문기술의 완성
	주 빠른 타격 동작		2. 보강 운동을	2. 전문체력강화
	안 - 기술의 과감성 집중 강화점 - 정확한 타격 기술 강화		이용한 전문 기술 보완	3. 보강운동 강화
훈련	체력	30%	70%	70%
비중	기술	70%	30%	30%

4. 월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

월	훈련 계획	실현중점	대회일자	대회장소	내 용
3	제45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대비 훈련 및 대회참가	대회기	3.17.~ 3.24.	전북 순창군	전술운영 중점지도
4	제29회 장원배 전국중고교소프트테니스대회 대비 훈련 및 대회참가	대회기	미정	미정	전위/후위 전문 트레이닝
4	제60회 한국중고소프트테니스 연맹회장기대회 대비 훈련 및 대회 참가	대회기	4.22.~ 4.27.	전남 해남군	전위/후위 전문 트레이닝
5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대비	대회기	5.3.~ 5.12.	경북 문경시	전문기술 · 게임운영

	훈련 및 대회참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대회기	5.25.~ 5.28.	전남 순천시	전술운영 중점지도
6	2024 전국소프트테니스종별선수권 대회 대비 훈련 및 참가	대회기	6.28.~ 7.5.	경북 영주시	실전능력 및 정신력훈련
7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대비 훈련 및 대회 참가	대회기	7.20.~ 7.28.	경기도 안성시	게임운영 방법 및 연구 분석
8	2024년 전국남녀중고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대비 훈련 및 대회 참가	대회기	8월중	미정	전술운영 중점지도
9~11	재활 훈련	회복기	-	-	체력회복 및 재활훈련
12	동계 강화훈련	회복기	-	_	체력회복 및 재활훈련
2025. 1월	동계 강화훈련	체력단련기	-	-	기초체력 및 인성교육 지도
2025. 2월	동계 강화훈련	체력단련기	_	_	기초체력 중점지도

5. 주간 세부 훈련 계획

내용	◆ 훈련장소 : 우리학교 소프트테니스장, 순창군 다목적 실내구장, 전지훈련장소 ◆ 훈련시간 : 학기 중(16:30 ~ 21:00), 방학 중(08:30 ~ 21:00) ※ 훈련일자, 훈련 내용, 훈련시간 및 장소는 날씨, 훈련장 사정, 공휴일, 대회일정 및 방학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요일	훈 련 내 용	비고 (체력운동)	훈련인원		
월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란타, 전위·후위연습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기초체력운동, 전위·후위 트레이닝	6명		
화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란타, 포지션별 기능 숙달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전문기술, 게임운영	6명		
수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란타, 전위·후위연습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기초체력운동, 전위·후위 트레이닝	6명		
목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란타, 게임전술훈련 및 단식·복식 경기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전술운영 집중지도	6명		
己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란타, 게임전술훈련 및 단식·복식 경기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전술운영 집중지도	6명		
토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전문기술,	6명		

	- 란타, 포지션별 기능 숙달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게임운영	
일	- 조깅, 준비운동 및 스트레칭 - 개인별 맞춤형 기초 체력 운동 - 보강운동 및 정리운동	기초체력운동/ 휴식	6명

6. 일일 훈련 계획

- 훈련시간 : 학기 중 훈련시간은 모든 정규수업을 끝내고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실시하며, 대회출전 전에는 세부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 ※ 훈련시간은 날씨, 학사일정, 대회일정, 방학기간(동계, 하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훈련장소 : 우리학교 소프트테니스장, 순창군 실내구장 및 전지훈련 장소

1) 학기 중 훈련 계획표

시 간	훈 련 내 용	비고
08:40	등 교	
08:50 ~ 12:20	오전 수업	
12:20 ~ 13:20	점 심	
10:00 15:55	O 등 사업	화요일 / 수요일은
13:20 ~ 15:55	오후 수업	15:40에 오후 훈련 시작
16:30 ~ 18:00	오후 훈련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0:30	야간 훈련	
21:00	종료 및 하교	

2) 방학 중 훈련 계획표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8 7 8 CC 11 7 D (21 8 8 9 1 C 7 7 1 C 8 7 1 C 8 9 1 C 1 C 7 1 C 8 9 1 C 1 C 1 C 8 9 1 C 1 C 1 C 8 9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C 1						
	하 계	동 계				
시 간	훈련내용	시 간	훈련내용			
08:30	등교	08:30	등교			
08:30~09:00	청소 및 훈련준비	08:30~09:00	청소 및 훈련준비			
09:10~09:30		09:10~09:30	미팅			
09:30~12:30	오전 훈련 (밸런스 트레이닝)	09:30~12:30	오전 훈련 (기초체력 트레이닝)			
12:30~13:30	점심 식사	12:30~13:30	점심 식사			
13:30~16:00	실내훈련 또는 휴식	13:30~16:00	실내훈련 또는 휴식			
16:00~18:00	오후 훈련 (전위/후위)	14:00~18:00	오후 훈련 (운동체력 트레이닝)			

18:00~19:00	저녁 식사	18:00~19:00	저녁 식사
10:0020:20	야간 훈련	10.00.20.00	야간 훈련
19:00~20:30	(단식/복식)	19:00~20:00	(단식/복식)
21:00	하교	20:30	하교

7. 훈련일지

2024학년도 소프트테니스부 훈련일지 결 재 지도자 담당교사 교감

훈련일시	2024년 월 일(수) 16:30 ~ 21:00		훈련장소		우리학교 소프트테니스장			
	총 원	1학년	2학년	3학년	결 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인원현황	6명	2명	2명	2명	((
참석인원	()명	불	참사유				
	*체온측정 이상 유무 : (정상 / 37.5℃ 이상 학생 수 - 명) *지도 및 훈련내용 준비운동 : 런닝 스트레칭 후위연습: 원바운드. 이동스트로크. 쇼트&롱. 스트로크. 런닝스트로크 전위연습: 란타. 서브&리시브. 네트발리. 중간발리. 스매싱. 톱							
안전교육	운동 전 체온 측정, 개인용구 사용, 운동 전·후 손 씻기 및 소독, 훈련 중 개인별 간격 유지, 준비 운동 및 정리운동 실시, 과도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 예방							
특이사항	*건강이상자 현황	황 - []명	건강	상이상자 명단	-[]			
(환자 등)	*사유 -							

∨. 학생선수 육성 및 운영 예산계획

1. 2024학년도 소프트테니스부 예상 예산 총액 (교부금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순	종 류	예상 예산 내역	비고
1	소프트테니스부 운영	5,000,000 원	
2	2024년도 육성종목 운영비	4,020,000 원	
3	2024년도 육성종목 교통비	5,000,000 원	大기교 그녀된 에사이
4	순창의별 육성사업	10,000,000 원	추가로 교부될 예산은
5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지원	6,600,000 원	미정.
6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비(미교부)	3,500,000 원	
7	육성종목 운영학교 동·하계 훈련비(미교부)	7,000,000 원	
	총액	41,120,000	

2. 연간 소프트테니스부예산 예상 소요 지출내역 (화일정, 대회일정, 공취일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가. 훈련경비 및 대회출전경비

① 동·하계 강화훈련 및 대회출전경비, 대회 대비 강화훈련경비 등

순	종 류	산 출 내 역		비고	
1	하계 강화훈련	단가 11,000원×식비 6명× 20일× 1식= 단가 25,000원×특식비 6명×3일× 1식= 단가 5,000원×간식비 6명×20일×1회=	1,320,000원 450,000원 600,000원		
2	동계 강화훈련	단가 11,000원×식비 6명× 38일× 1식= 단가 25,000원×특식비 6명×6일× 1식= 단가 5,000원×간식비 6명×38일×1회=	2,508,000원 900,000원 1,140,000원		
3	대회 대비 강화훈련	단가 11,000원×식비 6명× 50일× 1식= 단가 5,000원×간식비 6명×50일×1회=	3,300,000원 1,500,000원		
4	대회출전경비	단가 11,000원×식비 6명× 20일× 3식= 단가 25,000원×특식비 6명×10일× 1식= 단가 5,000원×간식비 6명×30일×1회= 단가 80,000원×숙박비 3개×30일×1회= 교통비 720,000원×렌트카1대×7회=	3,960,000원 1,500,000원 900,000원 7,200,000원 5,040,000원	숙박 (2인1실), 교통비 (렌트카이용)	
	총 액 30,318,000원				

나. 용품비 및 장비비

순	종 류	산 출 내 역		비고
		단가 220,000원×상·하의 6명× 2벌=	2,640,000원	
1	경기용 피복	단가 150,000원×상·하의 6명× 2벌=	1,800,000원	
		단가 200,000원×경기화 6명× 1개=	1,200,000원	
,	2 장비 구입	단가 250,000원×라켓 6명× 1개=	1,500,000원	
4		단가 50,000원×정구공 1타× 60박스=	3,000,000원	
		총 액	10,140,000	

3. 투명한 예산 집행

- 육성종목(소프트테니스부) 운영경비(도교육청 교부금 등)등은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경 비집행은 학교 법인카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
- 학부모 부담금이나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자 경비 등은 일체 부담시키지 않는다.
- 훈련 및 시합출전, 용품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할 경우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특별 훈련비 요청 또는 학교 자체 추경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Ⅵ.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예방교육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가. 기본방향

1)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2) 학생선수 대상 최저 학업성적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나. 관련법령

- 1)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 2)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 * 지도·감독, 학교회계 세입 항목,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등

다. 추진내용

- 1)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여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비람직한 학생선수상 정립 추진
- 2) 최저학력제 개요
 - (적용대상) 초(4~6학년)·중·고 학생선수*
 -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 (적용교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소속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40%(중)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 + 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 (대회참가제한) 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 시 다음 학기 대회참가 제한

(지침) 학교급별 운영

-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3)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참여 의무화
 - (학교) 학교장은 미 도달 학생선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 ※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 할 경우, **초중학교(5교과)는 교과별 12시간 운영 의무화**(학교 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4) 육성종목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
 - 육성종목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항상과정'에 성적자하 학생선수 참여 확대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미련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시스템 run-up(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과정을 활용하여 과목별로 이수
 - 전북e스쿨 사이트 : http://eschool.jbedu.kr
 - e-school 사이트: http://e-school.or.kr

-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 운영
-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의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최저학력제 업무처리 순서 >

- 1. (미도달판정) 매 학기말 고사 직후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에 대한 판정실시
- 2. (판정결과 내부결재) 미도달 학생 발생 시 해당 학생명, 과목명, 원점수 등을 표기한 내부결재
- 3. **(보충학습계획)** 미도달 학생에 대한 학교자체 보충학습계획[과목별 12시간의 차시별 학습계획이 명시되어야 함] 또는 e-school의 학습계획 등의 첨부된 내부결재
- 4. (보충학습실시) 정규수업시간 외 별도의 시간
- 5. (자체보충 학습결과처리) 차시별 학습계획 누적입력(학습결과에 대한 시수) 및 출석부 사본 또는 e-school의 학습확인서를 첨부하고 미도달 학생 해제를 표기한 내부결재
- ※ 미도달학생 없을시, 판정 및 판정결과 내부결재 후 최저학력제 미운영
- e-school을 활용한 학습 가능 시간

구 분		학습 시간
	아침시간	06:00 ~ 09:00
평일	점심시간	11:30 ~ 13:30
	오후 및 저녁시간	15:00 ~ 02:00
주말 및 공휴일		06:00 ~ 익일 02:00

2.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

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허용일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일수 변경
-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 ·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 변경
- "학생선수"란 <u>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u>이나 <u>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u>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2024학년도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 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u>실제 사용</u>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누적 6시수를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 ('18~'22) 출결처리 기준 : 지각, 조퇴, 결과 3회 누적 시 출석인정일수 1일 차감
- · 학교급별 1일 평균 수업시수 : (초3·4) 5.2시간 (초5·6) 5.7시간 (중) 5.9시간 (고) 6.1시간
- (교외체험학습)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 'Neis 학적의 출결 관리' 정보를 'neis-체육' 탭에서 연동하여 관리
- ※ 허용일수 초과 가능한 경우(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 <u>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u>, <u>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있음
 - ▼ 국가대표선수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일수를 초과 가능함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위에 제시된 일수는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일수는 아님.

❖ 출석인정 제도 개선

-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단계적·지속적 감축)
- ❖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학생선수 수업결손에 대한 e-school 보충학습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e-school 2시간 수강 의무화
- ❖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시 내신성적 반영

나.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참가 원칙

-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어 정규수업 이수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 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 해당 교육청 보고 의무화
- 학생선수가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 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으로 제공
 -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수강 의무화 ※ 1일(6교시) 수업결손 발생 시 e-school 수강 6시간 이수

3.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학교체육진흥법」제12조5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설치 규정
- (기능) 학교운동부지도자 지도, 배정 및 운영 계획 수립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 사회 스포츠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학교체 육진흥법 제12조 6항) 등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구성 : 7명 내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체육관련 전문가)로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

붙임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 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건강체력교실 운영)
-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 5.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사안 확인
- 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 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회
-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당해 년도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2. 시 도교육감(교육장)의 요청이 있는 때
- 3.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예방교육

- 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도핑교육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교육내용)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 · 학생선수 보호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깨끗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
 - (교육방법)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 이용 원격교육 등
 - (학교장)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연 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실시
 - (관련기관)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
 - · 금지약물 검색,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 등 활용

나.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 학교운동부지도자·학부모·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교육내용) 학생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 (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 ※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도 가능
-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의무화
- (교육내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선수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 입학비리 근절 등에 대한 교육(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 (교육횟수) 학기별 1회(연 2회) 이상 실시(집합, 사이버 연수 등)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고민(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학생선수에게 건강관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진로진학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내용

을 누가 기록하여 유지 관리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교장간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학생선수 상담일지						
2024학년도			순창중학	탁교		
상담 일시		상담 대상자				
상담 장소		상담자				
상담 내용	□ 가정 □ 건강 □ 교육관계	 □ 진로 □ 학교폭력 □ 정서 및 성격	□ 학업 및 성적 □ 행동문제 □ 기타[1		
특이사항 및 소견				,		
		작성자 : _		(인)		

○ 인권교육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인권교육을 연 2시간 이상 교육실시
- · (교육자료)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기 개발된 우수자료 공유 및 3 차시 분량 표준교재 개발 보급
-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보호센 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동영상교육 자료실 콘텐츠 적극 활용
- ※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되, 일반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실시도 가능
-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수립 시 **연 2회 이상 운동부 학부모 대상 교육** 반 영 및 실시(상시)

다. 학생선수 안전 예방교육

- 학생선수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 체육교사, 보건교사, 안전업무 담당 교사를 활용하여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학기별 1회)
- 연간 훈련 및 각종 훈련 계획 시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을 실시 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상황별·주제별)

※ 주제별 교육내용 (예시)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
	○ 상처의 종류 및 처치 방법
TH 4.L 1.I	○ 골절의 이해와 염좌 응급처치
명상 시 	○ 신체 부위별 골절 응급처치 방법
	○ 스포츠 활동 시 응급처치
	※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 위주
	○ 자동제세동기 활용 방법
	○ 부상자 상태 확인 및 쇼크 처치
11511	○ 교통안전 – 버스, 택시, 선박 등
시합 시	○ 재난안전 – 소화기 사용법, 붕괴 등
	○ 응급처치의 의미 및 발생 시 행동 대처 요령
	※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 위주

라. 학교운동부 청렴도 개선 계획

○ 추진방향

-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청렴도 제고
- 불법찬조금 및 향응 제공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학부모 대상 청렴 교육 강화
-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관계자 역량 강화
-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성·인권보호

○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정상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과 공개를 통한 운동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구축
- 청렴도 신장을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자(행정실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 자, 학부모) 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확대
- 학생선수의 기본 학습권 보장 및 교육적 관리 노력
-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노력
-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소통과 협력 강화

○ 세부추진내용

1)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노력

- 정상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예산(훈련비, 장비비, 용품비) 확보
- 지역기관 및 단체, 동창회와의 소통을 통한 운동부 지원 예산 확보
- 학교운동부지도자 추가고용 및 전지훈련 시 학부모부담금의 최소화 노력

2) 학교운동부 관련자 협의회 개최

- 시기 : 연 2회 이상

- 방법 :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

- 대상 : 학교장, 행정실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부모
- 내용
 -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집행 방안
 -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회계 처리 방안
 - 학생선수의 교육적 관리 방안
 -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및 운영 방안 등

3) 학교운동부 관련자 청렴교육

- 청렴연수 이수
 - 시간 : 연 2시간 이상
 - 방법 : 자체교육 등(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연수 포함)
 - 대상 : 학교장,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 내용
 - 학교운동부 청렴관련 연수
 - 공직자 청렴교육 등
- 지도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 시기 : 연중
- 방법 : 집합, 면담, 통신 등
- 내용
 -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지도교사의 효율성 제고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 학생선수의 교육적 관리
 -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대책
 -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 방안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등

• 학부모

- 시기
- ㆍ 청렴교육 : 연 2회 이상
- 학부모모니터링 : 연중
- 대상 : 학교운동부 학부모 전원
- 방법 : 청렴교육(집합교육 또는 학교방문), 모니터링(전화 또는 설문조사)
- 내용
 - 청렴교육 및 학부모 모니터링
 -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 불법적인 학부모회 조직 운영 근절
 -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학생선수보호,

운동 환경조성 등)

- 불법찬조금 모금 실태 조사
- 학교운동부지도자 만족도 조사(교육적 선수관리, 지도력, 선수보호 노력, 진학지도 등)

Ⅷ.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1. 목적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지닌 지도자로 하여금 학생선수를 조 기 발굴ㆍ육성하여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관리 및 종목별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격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 식ㆍ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은 다음과 같다.[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947호. 2014.12.31.]

가.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3. 채용 및 계약방법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매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채용 권한 : 초·중·고등학교장
-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조건
 - 1)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3) 공무원(일반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라. 계약기간

- 1) 12개월(2024. 3. 1. ~ 2025. 2. 28.)
- 마. 학교의 장은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직무수행 실적 및 복무태도
- 2)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 3) 전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지도자

바. 계약방법

- 1)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원을 배정받은 학교장은(이하'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보조코치 포함)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범죄경력 조회, (성)폭력 관련 상벌 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선수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한다.
 - 3) 학교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계약 후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4. 순창중학교 2023 운동부지도자 임용 현황 및 2024 채용

가. 2023학년도 소프트테니스부 남자중등부 운동부지도자 임용 현황

- 성명: 김기영

- 계약기간: 2023.3.1.~ 2024.2.29.

- 2023학년도 지도실적

순	종별	대회명	개인/단체	순위	비고
1	남중부	제44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1위	
'		제44회 회정기 선목소프트데디스대회 	개인복식	3위	
0	나즈ㅂ		단체전	3위	
2	남중부	제59회 한국중고소프트테니스 연맹회장기 대회	개인복식	1위	
			단체전	1위	
3	남중부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인복식	2위	
			개인단식	1위	
4	남중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2위	
			단체전	2위	
5	남중부	2023 전국중고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개인복식	2위	
			개인단식	1위	

나. 2024학년도 순창중학교 소프트테니스부 운동부지도자 채용

- 2024년 2월 중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채용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준수
- 최종 합격한 운동부지도자와 계약 체결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연봉은 2024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명시된 연봉기 준액 산정방식에 의거 지급
- 그 밖의 각종 수당은 시·도교육청의 지급기준에 따름

Ⅷ. 기대 효과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상위 입상을 목표로 강화훈련
- 훈련 및 시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향상
- 개인 기량 및 팀워크 증진을 통한 소프트테니스부 응집력 강화
- 바른 인성과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테니스 선수로서의 자부심 증진